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신규 입사자 PCR 의무 해제, 실습생 허용)

1. 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6996(2023. 5. 3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진단검사 관련 안내」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873(2021. 11. 3.), "신규 종사자 PCR 검사 의무"
 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274(2022. 3. 29.), "외부인 출입 통제"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 및 협회에서는 소관 장기요양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6.1.부터 시행)
○ 신규 종사자(입사자) - 업무 수행전 <u>PCR 검사 의무</u>	○ 신규 종사자(입사자) - 업무 수행전 <u>PCR 검사 의무 해제</u> * RAT(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 후 근무
○ 외부인 출입 - <u>요양보호사 실습생</u> , 자원봉사자에 한해 출입 허용 -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실습전 RAT 검사, 실습 시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2회 PCR 선별 검사 및 주2회 RAT 검사 시행 - <u>자원봉사자는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며, 출입 전 RAT 검사 실시</u> - 그외 시설·장비 보수, 응급환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1회만 출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및 증상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 ※ 출입자 명부 작성	○ 외부인 출입 - 실습생*, 자원봉사자에 한해 출입 허용 * <u>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u> - 실습생은 시설 신규 종사자에 준해 방역관리 준수 * 실습전 RAT 검사,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검사 - <u>자원봉사자는 3차 이상 접종 완료자에 한하며, 출입 전 RAT 검사 실시</u> * 외부강사 허용 접종기준과 동일 - 좌동(변경없음)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보건복지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보건복지과),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보건복지과),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보건복지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보건복지과),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보건복지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보건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보건복지과), 경기도지사(경기도보건복지과), 강원도지사(강원도보건복지과),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보건복지과),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보건복지과),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보건복지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보건복지과),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보건복지과),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보건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감염병관리과),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감염병관리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과),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감염병관리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감염병관리과), 경기도지사(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원도지사(강원도감염병관리과),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감염병관리과),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감염병관리과),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감염병관리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감염병관리과),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감염병관리과),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감염병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과), 보건복지상담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무관

정지은

행정사무관

조윤경

요양보험운영
과장

전결 6/5
임동민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2662 (2023.6.5.) 접수 기관관리부-827

(2023.6.7.)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13층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517

전송 044-202-3971 / jje2015@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